

#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

## 설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5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2009. 5. 20.(제159회 임시회 자체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
## 가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 개정(2008.12.31)에 따라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,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,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
(안 제4조의2)
    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가능
  -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(안 제11조)
    -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
    - 육아 휴직의 분할 사용
  -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제12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#### 【 법적 검토 】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(2009.2.24 지방공무원과-518호)에 의거 작성하고,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천시 조례규칙심의 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

#### 【 행정적 검토 】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채용과 복무,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이견 없음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
- 정확히 기록직은 무엇인지? 어느과 소관인지? 꼭 필요한 것인가?  
(박성하 의원)  
: 기록직은 지금 문서고에 문서기록관계 담당이며, 자치행정과 소관임. 정부에서 광역시는 작년까지 이미 채용을 완료했고 전산망시스템을 다 통괄함.
-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최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?(양순경 의원)  
: 6개월 이상 3년임.

#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1.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1부. 끝.